

인천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257520 판결 [압류등기말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대리인 B, C

2.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11.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1)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8. 접수 제22817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인천광역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15. 접수 제32713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17. 9. 19. 별지 목록 부동산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7. 11.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G은 2018. 8. 29. E 및 주식회사 H,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5190호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E에 대한 소장부분 등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은 E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소장부분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9. 4. 10. G의 E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G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1938호로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한 소장부분 등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소장부분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20. 2. 13. G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G은 2020. 3. 6.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2.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6. 접수 제11058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2020. 3.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4) E은 2020. 3. 27.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추완항소(인천지방법원 2019나57896)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1. 제1심 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G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도 2020. 3. 27.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추완항소(인천지방법원 2020나57441)를 제기하였고, G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사건은 2020. 12. 9.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5) 그 후 원고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5653호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4.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E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피고들의 압류처분

1) E은 피고들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8. 접수 제228176호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15. 접수 제327133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의 대위신청에 따른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E에 대한 채납처분으로서 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압류처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E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 당시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마친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며, 피고들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 제1심의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채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 압류등기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를 구하는 것도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추완항소를 하였고, 그 후 종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G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G의 원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G이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이 실효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소급하여 E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었던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체납자인 E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E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피고들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다(한편 이 사건은 압류해제가 아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 존부가 청구원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들이 압류해제사유 존부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압류해제사유도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의 내용과 동일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이상, 압류해제사유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승소판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러한 승낙을 받아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말소대상인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권리등기의 명의인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피고들을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1) 소장에 '남동구'라고만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